

[붙임3]

##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표준서식 [평가 및 협약용]

[표준서식 제 4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협약서
[표준서식 제 6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중간 실태조사서
[표준서식 제 7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제 8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사업비 사용내역서
[표준서식 제 9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서약서
[표준서식 제10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선정평가표
[표준서식 제11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선정평가 결과집계표
[표준서식 제12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최종평가표
[표준서식 제13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최종평가 결과집계표
[표준서식 제14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기업성장단계별 사업비 비목변경 신청서

[표준서식 제 4 호]

##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협약서

○ 과 제 명 :

○ 사 업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 개월 )

○ 총 사 업 비 : 원(₩ 원)  
※ 전담기관 지원금 : 현금 원(₩ 원)  
※ 주관기업 부담금 : 현금 원(₩ 원)  
현물 원(₩ 원)

○ 과제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당사자

(갑) 전담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을) 주관기관 :

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이하 육성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별첨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2조(육성프로그램의 수행)** (을)은 본 사업을 별첨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지급)** (갑)은 협약 시 (을)의 현금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다음, (을)에게 사업비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실시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사용)** ①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고, 사업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비 비목 변경신청서”를 통해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목별 적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① (을)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갑과 을의 협의하에 조정가능), 고유양식에 의해 작성, 제출 한다.

② (을)은 (갑)이 실시하는 각종 점검·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며 (갑)은 (을),에게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중간점검)** ① (갑)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할 경우엔 “계속”, 일부 보완이 요구된 경우엔 “보완”,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중단”으로 분류한다.

③ 중간점검 결과 “계속”과제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며, “보완”과제는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중단”과제는 사업을 중단하고 지급된 사업비를 정산검사 후 반환 조치한다.

**제7조(최종평가)** ① (갑)은 최종보고서의 심의와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최종평가는 과제 성과물을 토대로 “성공”,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 “실패” 과제의 경우는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침”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갑), (을)은 상호협의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업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① 본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법인 명의로 출원하여야 하며, 이후의 전용실시권은 대학이나 연구소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 반드시 소유토록 하고, 대학 및 연구소가 기업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단, (을)과 대학, 연구소, 기타 위탁기업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조정에 따른다.

② 육성프로그램의 성과물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나, 연구수행 중 발생된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에 대하여 (을)과 대학, 연구소, 기타 위탁기업 간의 소유권 논란이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을)은 본 육성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남테크노파크의 '나주시 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을)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본 협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될 경우에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약 시 까지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 본 조 제③항의 사업비 정산은 (을)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해약 시에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한다.

⑤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 잔액처리)**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정산 검사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재단지원금의 환수)** (을)은 본 사업의 종료 후 (갑)의 평가결과에서 정한 방법과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신의 성실에 의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 결과, 과제가 '실패'일 경우, 실패사유에 따라 성실, 불성실로 구분하여 제재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성실 실패'일 경우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성공'시의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불성실 실패'일 경우 지원금에 대해 정산 검토 후 최소 50% 금액을 상환한다.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중간 실태조사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위탁기관			위탁과제책임자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개월)				
사업비 (천원)	구 분	TP지원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금 액				

2. 조사자·대담자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사자			(인)
			(인)
			(인)
대담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26년 월 일	방문장소	

3. 사업 추진현황(※ 주관기관에서 기재)

항 목	내 용	특이사항
목표의 달성도	※과제의 성공 수행을 위한 추진현황 점검	※실적이 부진했을 경우 사유제시







# 제 출 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제명]에 관한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개발기간 : 20 . . ~ 20 .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수혜기업)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공급기업)

총괄책임자 :

연 구 원 :

" :

" :

" :

" :

[작성법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 초 록 )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	
개 발 기 간	20 . . ~ 20 . . ( 월 )			
총개발사업비 (천원)	전담기관 지원금			계
	부담금	현금		
		현물		
위 탁 기 관				
주요기술용어 (6 ~ 10개)				

※ 본 요약서는 3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목 차

## 1. 사업의 개요

1-1 개발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1-2 개발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필요성

1-3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1-4 국내외 관련제품 시장동향

## 2. 사업의 목표

2-1 개발 목표

2-2 개발기술(또는 제품)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3. 개발내용 및 범위

3-1

3-2

3-3

## 4. 개발결과

## 5. 사업화 방안

## 6. 기타

##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 Chapter별 작성요령

- 사업의 개요 :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사업의 목표 :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개발내용 및 범위 : 개발기간동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상세히 기술  
(세부추진일정에 대한 목표달성도,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술)
- 개발결과 : 최종적 개발 결과물에 대해 사업 목표와 대비하여 개발성과(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상세히 기술  
개발 완료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 수치를 열거하여 기재(시장확보, 매출액증가 등)  
(첨부자료를 적극 활용 : 공인성적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
- 사업화 방안 : 현상태의 사업화 정도를 기준으로 향후 사업화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작성
- 기타 : 과제내용과 관련한 별도자료를 첨부하거나 TP에 요청 · 건의사항 등을 작성

### ○ 본문 작성시 유의사항

- 글자체 : 휴면명조
- 글씨크기 : 대분류제목 16(굵게), 중분류제목 14(굵게), 본문 12
- 줄간격 : 180% 기준
- Chapter가 바뀔 때는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본문내용에서 참고자료, 관련사진, 도면 등을 적극 활용

### ○ 상기의 작성법 순서대로 제본되어야 함 ( 표지 - 제출문 - 요약서 - 목차 - 본문 - 첨부자료 )

[표준서식 제8호]

##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사업비 사용내역보고서

1. 계획 및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비 고
	계 획	집 행	잔 액	
사업비				

2. 전담기관 지원금 잔액 산정표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현금부문)	집행금액	정산금액	회수금액 (잔액)
㉠ 지원금	㉡	㉢ 집행잔액 =㉡-㉣	㉤
㉢ 기업부담금(현금)			
㉣ 소 계		㉣ 출연비율 =㉠ ÷ ㉣	
㉤ 발생이자		㉥ 정산금액 =㉢ × ㉣	
㉡ 합 계			



5. 개발사업비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 첨부



[표준서식 제10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선정평가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평가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2.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점수	
			불량	미흡	보통	우수	탁월		
1. 기술성 (30)	기술의 우수성(20)	- 국내외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우위비교	20	4	8	12	16	20	
	파급효과(10)	- 해당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	10	2	4	6	8	10	
2. 사업성 (30)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자 needs 및 정보 파악 여부 - 기술개발의 성공 및 사업화 가능성 및 마케팅 능력	10	2	4	6	8	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20)	- 개발결과의 사업화 소요기간 (즉시, 6개월 내, 1년 내, 1년 이상) - 성장가능성(5%, 10%, 20%, 30% 이상)	20	4	8	12	16	20	
3. 기술개발능력 (20)	기술개발 수행역량 (15)	-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정도 - 신청과제의 주생산품과의 연계성 - 신청과제 관련 기자재 보유정도	15	3	6	9	12	15	
	사업추진 역량(5)	- 컨소시엄별 기술개발 분담의 적정성 - 컨소시엄별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 - 상대 업체의 기술개발 능력 파악정도	5	1	2	3	4	5	
4. 지원의 적정성 (20)	추진전략의 적절성(10)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10	2	4	6	8	10	
	기대효과 (10)	- 사업수행을 완료시 기대효과	10	2	4	6	8	10	
평가의견	합 계			점					

평가위원 \_\_\_\_\_ (인)



##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최종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 . . .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점수
			불량	미흡	보통	우수	탁월	
1. 목표 달성도 (30)	◦최종목표 달성 정도	-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	2    4    6    8    10					
	◦기술개발결과와 성능평가 적정성	-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증서 등)가 양호한가 ?	2    4    6    8    10					
	◦기술개발추진 과정의 적정성	- 기술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이 적정한가?	2    4    6    8    10					
2. 기술성 (30)	◦기술개발결과와 실용성	- 상품으로의 적용가능성 ?	2    4    6    8    10					
	◦기술적 성능수준	-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 ?	2    4    6    8    10					
	◦파급효과	- 타기술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정도?	2    4    6    8    10					
3. 사업성 (4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 ?	2    4    6    8    10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가능 정도 ?	2    4    6    8    10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점유가능성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 - 개발기술의 시장점유가능 정도 ?	4    8    12    16    20					
평가의견	평가결과	우수(    ), 보통(    ) 성실실패(    ), 불성실실패(    )	합 계		점			

평가위원

(인)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사업비 비목 변경 신청서				
개 요				
주관기관		대 표 자		
개발기간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개발과제명				
변 경 내 역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				
예산항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내역	증감사유
계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예산 항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6.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연구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p>				
주 관 기 업	담 당	부 서 장	대 표	

※ 별첨)자금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역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과 제 명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2026 나주시스타기업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구 분	기관명/성명	법인/주민번호	인감/서명
주관기관 (수혜기업)			(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수혜기업)			(인)
위탁기관 (공급기업)			(인)